

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년 6월 8일 / 포항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6년 6월 8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330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■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(2026. 6. 18.) 상정 . 질의답변 . 토론 .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강현주 복지정책과장)

가. 개정사유

○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조직, 기능 및 운영 기준을 법령에 맞게 정비

나. 주요내용

○ 지역사회보장협의체·실무협의체·실무분과 구성 기준 정비(안 제5조~제8조)

○ 읍·면·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체계 간소화(안 제9조)

○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통일하고 회의 소집·의결 절차 및 보고체계를 명확히 정비함(안 제12조~제16조)

다. 관련법령

○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

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8조제2항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경희)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·기능 및 운영 기준을 정비하여 지역사회 복지 체계를 공고히 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

○ 종합검토 결과

- 최근 복지 수요가 다양화·복합화됨에 따라 민·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보장 문제를 발굴하고 대응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.
-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조직, 기능 및 운영기준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, 개정 취지에 부합함.
- 주요 내용으로는 대표협의체, 실무협의체, 실무분과 및 읍·면·동 단위 협의체의 구성·운영 기준을 정비하고, 위원 임기, 회의 운영 및 보고체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.
- 다만,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내 복지자원 연계와 민관 협력의 핵심 기구인 만큼, 단순한 제도적 정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임.
-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며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략

5. 토론의 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